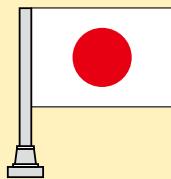


# 성평등 관련 일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소은영(한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1. 일본의 성평등 관련 법제 개관

일본에서 성별 또는 젠더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7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행동계획을 책정하기 시작하여, 1999년 6월 23일 법률 제78호로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이 제정되었다. '남녀공동참획'은 남녀를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한 표현이지만, '여성차별철폐'나 '남녀평등'보다 일본 사회에서 반발이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에서는 남녀공동참획社会의 기본이념으로 남녀의 인권 존중, 사회제도나 관행에 대한 고려, 정책 등 입안과 결정에 대한 공동참획, 가정생활에서의 활동과 다른 활동의 양립, 국제적 협조를 열거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한다. 아울러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 수립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법 제정 후 폭력방지 관련 법률, 육아휴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녀공동참획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5년 10년간의 한시적 입법으로 제정된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현황 분석 및 개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 기회균등법(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제5조~제9조에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성평등 정책은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및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나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남녀공동참획'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일본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성전환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성동 일성성장해자특례법(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 도쿄도 시부야구 조례(渋谷区男女平等及び多様性を尊重する社会を推進する条例)에서 동성 커플에 대하여 '파트너쉽 증명'을 발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 가. 일본의 행정 및 집행 조직 체계

일본의 행정은 내각이 담당하고, 내각은 수장인 총리와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일본 헌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참조). 2016년 현재 내각은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및 추진본부, 인사원, 그리고 내각부, 부통령 및 13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내각부는 2001년 내각부설치법이 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국정의 기본방침을 구체화하는 기획·입안과 종합조정의 업무를 담당한다(내각부설치법 제3조 제3항 참조). 내각부의 주임대신은 총리이고, 내각관방장관이 총리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내각부설치법 제8조 제1항). 남녀공동참획정책의 경우, 내각부에는 남녀공동참획 담당 특명담당대신이 있고, 내각부설치법 제18조와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남녀공동참획회의’를 두고 있다.

### 나.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 (1)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男女共同参画推進本部)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는 내각에 설치된 조직으로, 본부장은 총리이며, 내각관방장관,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된다.

#### (2) 남녀공동참획회의(男女共同参画会議)

남녀공동참획회의는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의장은 내각관방장관, 의원은 국무대신 12명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회의에서는 기본계획 관련 의견제출, 기본방침·정책 및 중요사항 심의, 시책 실시상황 감시, 시책이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남녀공동참획국(男女共同参画局)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는 남녀공동참획국에서는 남녀공동참획회의의 사무 및 남녀 공동참획사회 만들기에 관한 사항의 기획·입안 및 종합 조정, 남녀공동참획백서 작성 및 조사연구,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의 보급·계발, 지방공공단체나 민간단체, 국제기관과의 연대·협력의 기능을 수행한다.

#### (4) 기타

그 외 남녀공동참획 특명담당대신의 의뢰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남녀공동참획추진연회회의(男女共同参画連携会議)’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각종 전문조사회 등이 있다.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후생노동성에서 ‘성동일성장해’에 대한 병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치료방법 등을 소개할 뿐이다.

## 3. 평가

일본에서 성평등 정책은 남녀공동참획사회의 형성을 지향하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세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남녀공동참획사회’의 추진이라는 큰 방향성은 성주류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자 하였던 측면과 일본 사회에서 수용되기 쉬운 방식을 선택했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남녀공동참획사회의 실현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성역할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고 실제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배려에 대해서는 입법이 미비한 상황이지만,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